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4340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1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원고 2 내지 143의 소송대리인 ○○○○공단

담당변호사 문○○, 서○○

피고, 피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 박○○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7130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특별시는, 원고 ○○특별시의 수납권 행사가 확정적으로 침해된 때에 원고 ○○특별시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특별징수의무자인 ○○광역시장의 징수권이 소멸한 2022. 9. 1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2014. 4. 9.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배분함으로써 원고 ○



○특별시의 주행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원고 ○○특별시에 대한 손해가 현실화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광역시장의 주행세 특별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2022. 9. 15.에서야 비로소 원고 ○○특별시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 ○○특별시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위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7. 1. 12.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은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의 조세포탈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을



통해 범행의 주체나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유무죄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로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박○○

판사 김○○



[별지1]

원고 목록

1. ○○특별시
2. ○○광역시
3. ○○광역시 ○○군
4. ○○광역시
5. ○○군
6. ○○광역시
7. ○○군
8. ○○군
9. ○○광역시
10. ○○광역시
11. ○○광역시 ○○군
12. ○○특별자치시
13. ○○시
14. ○○시
15. ○○○시
16. ○○시
17. ○○시
18. ○○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19. ○○시
20. ○○○시
21. ○○시
22. ○○시
23. ○○시
24. ○○시
25. ○○○시
26. ○○시
27. ○○시
28. ○○시
29. ○○시
30. ○○시
31. ○○시
32. ○○시
33. ○○시
34. ○○시
35. ○○시
36. ○○시
37. ○○시
38. ○○시
39. ○○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40. ○○시

41. ○○군

42. ○○군

43. ○○군

44. ○○시

45. ○○시

46. ○○시

47. ○○시

48. ○○시

49. ○○시

50. ○○군

51. ○○군

52. ○○군

53. ○○군

54. ○○군

55. ○○군

56. ○○군

57. ○○군

58. ○○군

59. ○○군

60. ○○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61. ○○시

62. ○○시

63. ○○시

64. ○○군

65. ○○군

66. ○○군

67. ○○군

68. ○○군

69. ○○군

70. ○○군

71. ○○군

72. ○○시

73. ○○시

74. ○○시

75. ○○시

76. ○○시

77. ○○시

78. ○○시

79. ○○군

80. ○○군

81. ○○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 82. ○○군
- 83. ○○군
- 84. ○○군
- 85. ○○군
- 86. ○○시
- 87. ○○시
- 88. ○○시
- 89. ○○시
- 90. ○○시
- 91. ○○시
- 92. ○○시
- 93. ○○군
- 94. ○○군
- 95. ○○군
- 96. ○○군
- 97. ○○군
- 98. ○○군
- 99. ○○군
- 100. ○○군
- 101. ○○군
- 102. ○○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103. ○○시

104. ○○시

105. ○○시

106. ○○시

107. ○○시

108. ○○시

109. ○○시

110. ○○시

111. ○○시

112. ○○군

113. ○○군

114. ○○군

115. ○○군

116. ○○군

117. ○○군

118. ○○군

119. ○○군

120. ○○군

121. ○○군

122. ○○군

123. ○○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124. ○○군

125. ○○시

126. ○○시

127. ○○시

128. ○○시

129. ○○시

130. ○○시

131. ○○시

132. ○○시

133. ○○군

134. ○○군

135. ○○군

136. ○○군

137. ○○군

138. ○○군

139. ○○군

140. ○○군

141. ○○군

142. ○○군

143. ○○특별자치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별지2]

순번	원고	청구금액(원)
1	○○특별시	437,792,000
2	○○광역시	160,764,588
3	○○군	5,443,749
4	○○광역시	128,422,791
5	○○군	9,638,621
6	○○광역시	123,163,351
7	○○군	3,048,470
8	○○군	842,661
9	○○광역시	73,498,723
10	○○광역시	75,722,964
11	○○군	12,319,210
12	○○특별자치시	4,753,696
13	○○시	54,210,423
14	○○시	50,054,625
15	○○○시	16,867,218
16	○○시	28,698,378
17	○○시	35,874,631
18	○○시	13,798,843
19	○○시	23,408,711
20	○○○시	3,748,844
21	○○시	34,632,389
22	○○시	49,134,555
23	○○시	3,760,6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24	○○시	8,420,707
25	○○○시	28,014,223
26	○○시	9,967,428
27	○○시	21,062,090
28	○○시	13,549,657
29	○○시	7,673,150
30	○○시	7,257,349
31	○○시	55,741,662
32	○○시	19,303,045
33	○○시	11,075,493
34	○○시	9,623,139
35	○○시	15,266,679
36	○○시	32,848,278
37	○○시	15,814,445
38	○○시	9,549,415
39	○○시	8,021,863
40	○○시	5,660,497
41	○○군	1,941,879
42	○○군	2,900,286
43	○○군	5,490,195
44	○○시	15,980,323
45	○○시	10,490,128
46	○○시	4,351,903
47	○○시	2,379,060
48	○○시	3,650,79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49	○○시	3,176,749
50	○○군	3,100,077
51	○○군	2,028,136
52	○○군	1,839,403
53	○○군	2,164,524
54	○○군	1,881,426
55	○○군	2,039,931
56	○○군	1,080,788
57	○○군	959,881
58	○○군	1,513,545
59	○○군	1,254,038
60	○○군	1,371,259
61	○○시	41,795,372
62	○○시	10,073,590
63	○○시	6,398,470
64	○○군	1,306,382
65	○○군	2,241,197
66	○○군	1,943,354
67	○○군	1,640,350
68	○○군	3,523,987
69	○○군	1,610,123
70	○○군	5,039,744
71	○○군	1,320,389
72	○○시	32,021,837
73	○○시	5,760,02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74	○○시	4,719,784
75	○○시	15,961,892
76	○○시	8,739,930
77	○○시	5,448,173
78	○○시	2,411,498
79	○○군	2,574,427
80	○○군	2,964,425
81	○○군	2,533,142
82	○○군	1,248,140
83	○○군	3,893,342
84	○○군	4,050,374
85	○○군	2,940,096
86	○○시	8,969,948
87	○○시	33,811,846
88	○○시	14,186,629
89	○○시	14,385,682
90	○○시	4,876,815
91	○○시	3,391,285
92	○○시	4,059,220
93	○○군	4,322,414
94	○○군	1,090,372
95	○○군	981,998
96	○○군	858,142
97	○○군	1,172,942
98	○○군	1,139,02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99	○○군	2,356,206
100	○○군	2,430,666
101	○○군	3,010,134
102	○○시	28,800,854
103	○○시	13,962,509
104	○○시	5,956,128
105	○○시	7,635,551
106	○○시	22,515,181
107	○○시	4,910,728
108	○○시	5,091,350
109	○○시	4,134,418
110	○○시	3,039,623
111	○○시	12,599,360
112	○○군	1,096,270
113	○○군	2,226,452
114	○○군	1,099,219
115	○○군	695,951
116	○○군	1,562,203
117	○○군	1,971,369
118	○○군	1,879,214
119	○○군	2,242,671
120	○○군	6,575,406
121	○○군	1,804,016
122	○○군	1,251,089
123	○○군	2,211,70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2-12

124	○○군	389,998
125	○○시	91,605,235
126	○○시	15,977,374
127	○○시	5,941,383
128	○○시	5,237,323
129	○○시	28,113,750
130	○○시	4,812,675
131	○○시	12,504,994
132	○○시	12,974,613
133	○○군	1,144,190
134	○○군	7,811,013
135	○○군	2,954,841
136	○○군	2,378,323
137	○○군	1,580,634
138	○○군	2,110,706
139	○○군	1,486,267
140	○○군	4,932,108
141	○○군	2,494,806
142	○○군	1,829,819
143	○○특별자치도	27,961,142